| 금융위원회 | 보도자료 | 금융감독원 |
|---|---|---|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.11.4.(수) 금융위 의결 후

# 계리가정보고서 도입 등 「보험업감독규정」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

◈ **(계리가정 관리 강화)** 보험회사는 **계리가정 산출·변경**에 관한 **내부통제기준**을 마련하고, 연중 계리가정 변경시 **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**하며,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시 **계리가정보고서**를 **금융감독원**에 **제출**

◈ **(경영실태평가 강화)** **금리변동 위험 관리** 및 GA에 대한 **판매위탁리스크 관리책임 강화**를 위한 평가항목(듀레이션 갭 및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) 신설

◈**(실손보험 계약전환 지원)** **계약전환 할인제도**와 관련한 **실손보험상품**은 **단독형 설계의무 적용대상**에서 **제외**하여 기존 주계약에 **특약으로 부가 허용**

'26.11.4.(수), **금융위원회**는 「**보험업감독규정**」 **개정안**을 **의결**하였다. 이번 개정은 「**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**」('26.1월), 「**듀레이션 갭 규제 방안**」('25.10월) 등 **그간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**를 **감독규정에 반영**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변경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의결되었다.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## Ⅰ 주요 내용

### 1. 계리가정 관리 강화

#### 1 계리가정보고서 신설

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의 산출에 적용한 **계리가정에 관한 보고서**(계리가정보고서)를 작성하여 **매년**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추어 **금융감독원에 제출**하여야 한다. 계리가정보고서에는 **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,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결과,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**에 관한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 관련 핵심정보가 포함된다.

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**계리가정 관리**가 **체계화**되고, 회사별·상품별 가정의 수준과 변동추이를 비교·분석하여 **이상징후를 조기에 식별**하는 등 감독행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.

### 2 계리가정 산출·변경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

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·변경에 관한 **내부통제기준을 마련**하여야 하며, **연중 계리가정**을 **변경**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·내용 및 재무영향 등을 **위험관리위원회**(이사회 內 위원회)**에 보고***하여야 한다.

* 다만, 관련 법령 변화에 따른 변경이거나 변경에 따른 재무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 생략 가능

## 2. 경영실태평가(RAAS) 강화

### 1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

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**자산·부채관리**(ALM) **역량**을 높이기 위해 **듀레이션 갭**을 **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**로 **신설**한다.

- **(듀레이션)** 금리 변동 시 자산·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민감도
- **(듀레이션 갭)** 자산·부채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서,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지표
  (듀레이션 갭 = 자산듀레이션 – 부채듀레이션 × [금리부 부채 / 금리부 자산])

다만, 최근 금리 여건 등 **시장상황**과 보험회사의 충분한 **준비기간**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**듀레이션 갭 지표**는 **'28.1.1.부터 시행**한다.

### 2 법인보험대리점(GA) 운영위험 평가항목 신설

보험회사의 **법인보험대리점**(GA) **채널 영업 확대**와 **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**에 대응하여, **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리스크 부문**에 **「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」 비계량 평가항목**을 **신설**한다. 이를 통해 법인보험대리점 판매위탁에 대한 **보험회사의 관리책임**을 강화하고 **소비자피해 예방**과 **불건전 판매관행 개선**을 유도할 계획이다.

## 3. 기타 개정 사항

1 **(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정비)** **실손보험**의 **단독형 설계의무**는 실손보험 판매 시 **다른 상품**을 **끼워파는** 등 소비자 피해를 **방지**하기 위해 도입되었다. **계약전환 할인제도***는 기존에 대부분 특약으로 판매된 실손보험계약을 **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**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,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실손보험상품은 **단독형 설계의무 적용대상**에서 **제외**하여 **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**한다.

* '13.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·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실손으로 전환 시 **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%를 할인**하는 제도로 **선택형 특약 할인** 제도(1·2세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 할인)와 함께 **'26.11월중 시행예정**

2 **(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방식 개선)** 비상위험준비금은 **당해 보험료의 일부**를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적립토록 하는 준비금으로, 적립 취지를 반영하여 매년 적립액은 **당해연도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**하도록 한다.

3 **(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)** **'27년부터 국제회계기준**(IFRS18)이 **시행**됨에 따라 **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** 항목을 개정*하고, **손익분석 시 계정별 손익 구분 기준**도 이에 맞추어 정비한다.

* (기존) 보험손익·투자손익·영업손익·영업외손익·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
(개정) 보험손익·투자영업손익·기타영업손익·영업손익·투자손익·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·재무손익·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

## II 향후 계획

이번 「보험업감독규정」 개정안은 **고시한 날**부터 **시행**한다. 다만, **계리가정 산출·변경 내부통제, 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신설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사항**은 '27.1.1.부터, **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**은 '28.1.1.부터 시행한다. 아울러 계리가정보고서는 '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제출하여야 한다.

※ 규정변경예고안('26.9.11. 보도자료 참조)에 포함되었던 보험회사의 부동산PF 신용공여 한도 신설은 별도로 감독규정 개정을 진행중('27.1.1. 시행 목표)
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**개정 사항**이 **현장에 안착**될 수 있도록 **이행 상황**을 **점검**해 나갈 계획이다.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괄부서 | 금융위원회<br>보험과 | 책임자 | 과 장 | 임형준 | (02-2100-296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배수암 | (02-2100-2964) |
| | 금융감독원<br>계리리스크감독국 | 책임자 | 국 장 | 주요한 | (02-3145-724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박정현 | (02-3145-7242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현은하 | (02-3145-7245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강수원 | (02-3145-7250) |
| | 금융감독원<br>보험감독국 | 책임자 | 국 장 | 이권홍 | (02-3145-746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변지영 | (02-3145-7455) |
| | 금융감독원<br>보험상품분쟁2국 | 책임자 | 국 장 | 이상진 | (02-3145-575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전현욱 | (02-3145-5248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